

□ 신용대출 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 아래 필수 기재사항 작성만으로도 금융상품 이용 계약이 가능합니다.

1. 고객님의 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성명	영문명 *여권상 영문명과 동일하게 기재	국적	생년월일
자택주소(실거주지)		자택전화	E-mail
자택주소(주민등록지)		휴대폰 <input type="checkbox"/> SKT <input type="checkbox"/> KT <input type="checkbox"/> LGU+	
청구서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휴대폰메시지	<input type="checkbox"/> 미수령
결제계좌	<input type="checkbox"/> 하나은행	<input type="checkbox"/> 기타()	계좌번호()
결제일	<input type="checkbox"/> 1일 <input type="checkbox"/> 7일 <input type="checkbox"/> 13일 <input type="checkbox"/> 17일 <input type="checkbox"/> 21일 <input type="checkbox"/> 23일	<input type="checkbox"/>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즉시출금

※본인은 본인계좌에서 귀사의 결제금액을 자동이체 및 즉시출금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즉시출금이란 연체금 및 중도상환 등 고객과 대금정산 필요 시 고객 요청에 따라 실시간으로 출금하는 방법으로 하나은행계좌만 해당됩니다.)

2. 대출의 용도 및 거래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대출용도	<input type="checkbox"/> 개인용 <input type="checkbox"/> 개인사업자용
실제 금융거래 당사자 본인 여부 확인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금융거래의 실소유자가 본인이 아닐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추가 정보 제공 거절 시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정보를 기재해 주세요(개인사업자용 선택시 필수 기재)

사업자명	사업자등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업태/종목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형태 <input type="checkbox"/> 소유 <input type="checkbox"/> 임대
사업장 주소	

※대출용도가 사업자용인 경우 사업자 정보 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은 필수 사항입니다. 또한, 기업 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는 필수사항으로 미동의시 개인용 대출로 진행됨을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확인사항

아래의 정보 수집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적합한 구매권유(만65세 이상인 자, 은퇴자, 주부 등에게 기한의이익상실 등 상품설명 강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귀하가 아래의 정보제공에 동의하시면 상품에 대한 불이익 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우선하여 설명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출 절차가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input type="checkbox"/> 추가설명 원함 (<input type="checkbox"/> 65세이상 고령층 <input type="checkbox"/> 은퇴자 <input type="checkbox"/> 주부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추가설명 원하지 않음
---	--------------------------------------

4.대출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한 정보를 기재해 주세요

직장명	부서명	직위
직장주소	직장전화	
근속기간(사업기간)	연소득	만원

※ 급여소득(직장)을 기준으로 대출받으시는 경우 작성

「선택 기재 사항」 ※금융상품 이용 계약 체결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필요시 작성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확한 한도 및 금리산정 등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입니다.(신용평점 가점요인으로 활용되어 한도가 상향될수 있습니다.)	
추가 요청 정보	고용형태 <input type="checkbox"/> 정규 <input type="checkbox"/> 계약 <input type="checkbox"/> 파견 <input type="checkbox"/> 기타()
	주요소득원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 <input type="checkbox"/> 임대소득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input type="checkbox"/> 기타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서명/인)

□ 신용대출 약정서

대한민국정부 인지세 남대문세무서장 후납승인 2014년 11호	대출금액 구간별 인지세 .5천만원 이하 : 면제 .1억원 이하 : 7만원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소득구분	<input type="checkbox"/> 급여소득자 <input type="checkbox"/> 자영업자 <input type="checkbox"/> 전문직 <input type="checkbox"/> 프리랜서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자 <input type="checkbox"/> 공무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출금액	금	원(W)	상환기간	개월
약정 이자율	연	%		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원리금균등분할 <input type="checkbox"/> 만기일시
중도상환 수수료	만기1년 이상	중도상환원금 × 1%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1%) × 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 잔존기간 : 30일 미만 상환 시 '대출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			
	만기1년 미만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 잔존기간 : 30일 미만 상환 시 '대출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			
지연 배상금율	() % 약정이자율 + 최고 3%(법정최고금리 이내) *연체 발생 시점에 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리 중 높은 금리를 약정이율로 함 1.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 이율 2.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일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인지세	인지세	원	고객부담인지세	원	인지세는 당사와 고객이 각 50%씩 부담
대출 목적	<input type="checkbox"/> 주택구입 <input type="checkbox"/> 전세자금 <input type="checkbox"/> 결혼자금 <input type="checkbox"/> 교육비 <input type="checkbox"/>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대출상환 <input type="checkbox"/> 사업자금 <input type="checkbox"/> 생활비 <input type="checkbox"/> 기타				

- 본인은 약정 내용과 뒷면 약관내용(개인신용대출 약관 및 자동차체 약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잘 이해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이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약정서 및 약관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약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되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다만,고객이 사전에 반환 요청을 한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 본인은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에 근거하여 하나금융그룹내 지주사 및 자회사간에는 고객정보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것과 고객정보 취급방침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 취급방침을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 시 고객께서는 고객확인을 위한 신원정보 및 관련자료를 제공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기재된 정보를 검증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문서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 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충분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외부에 제공되지 않으며, 고객의 정보는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만 관리하고, '금융실명법' 및 '신용정보법' 등에 의해 금융기관 임직원이 이를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특약사항] 대출금액 및 이자율은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대출신청인 :

(서명/인)

[직원기재란]

본인확인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증(발급일자:	발급기관:)
	<input type="checkbox"/> 운전면허증(면허증번호:)
	본인확인자 :		(서명/인)
권유자	직원번호/성명	서명/인	소속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동의서

아래의 동의사항은 대출계약 및 유지를 위한 필수 사항입니다.

1.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수집, 이용에 관한 사항

하나카드(주) 귀중

귀사와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신청 상품서비스 제공, 법령상 의무이행,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분쟁처리, 전화상담업무, 민원처리, 본인여부 확인

수집, 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①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 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성별, 국적,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음성data, 휴대전화 관련정보(UICC), CI, 아이핀번호, 차량정보
- ② 신용거래정보 : 귀사 및 타 금융사의 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가계당좌거래,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 상거래 관련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이용한도 등 거래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③ 신용도정보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신용조회기록, 채무재조정약정, 연체, 부도, 대위변제,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관련 금액, 발생·해소 시기 등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④ 신용능력정보 :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⑤ 공공기관정보 : 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결정정보,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공공요금관련 정보,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등 본인의 식별·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 보유 정보
- ⑥ 결제대금 출금자등이체 정보: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결제계좌 발급기관명, 결제계좌번호, 신청인명, 예금주와의 관계, 예금주 연락처, 신청인 연락처
- ⑦ 기타 계약 및 서비스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제공한 정보
※ 이하에서는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기타 본인의 신용판단정보에 해당하는 각각의 개별정보 명칭은 생략합니다.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거래 종료(회원 탈퇴 또는 채권·채무관계 종료)일로부터 5년(단, 관련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본인) 생년월일	성명	(서명/인)
---	--------------	----	--------

2.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귀사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신용조회회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거나, 공공기관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정보

조회 목적 :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개선

조회동의 효력기간 : 귀하가 상기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당해 거래 종료일 및 동의철회시까지 상기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당사 또는 본인에 의해 신청한 계약이 거절되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본인) 생년월일	성명	(서명/인)
---	--------------	----	--------

3. 개인(신용)정보 필수적 제공에 관한 사항

이 계약과 관련하여 귀사가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개인(신용)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22조,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의2)
 - 신용조회회사: NICE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본인의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본 계약 및 본 계약 이전 발생 계약의 유지 또는 사후관리 등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등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③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정보, 신용능력정보, 공공기관 정보
-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조회회사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약에 근거한 기간까지

거래목적 달성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업무처리 수탁업체 제공 등)

-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대출업무 위탁(대출모집인), 본인인증업체, 본인확인기관, 신청서 등 문서 관리 업체(입력·스캔·보관·폐기), 우편물 배송 및 반송업체, 이용대금명세서 제작 및 발송업체, 회원관리 업체, 전화상담 업체, 전산처리 및 개발·유지·보수업체, 이메일·문자메시지·모바일쿠폰발송업체, ATM서비스업체, 결제대금출금업체, 채권추심업체, 유동화자산 실사업체, 사옴·판촉물 발송업체, 법무사, 법무법인, 녹취록 작성업체, 녹취서버 운영업체, 백업데이터 보관 업체, 범죄행위의 고소·고발/관계법령에 의한 요청 기관(수사기관 및 기타요청기관), 금융사고방지를 위한 금융기관
-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대출업무 위탁(대출모집인), 본인인증, 본인확인 연계정보 CI(DI) 수집, 신청서 등 문서 관리 (입력·스캔·보관·폐기, 우편물 배송 및 반송, 이용대금명세서 제작 및 발송, 회원관리, 전화상담, 전산처리 및 개발·유지·보수, 이메일·문자메시지·모바일쿠폰발송, ATM서비스, 결제대금출금, 채권추심, 유동화자산 실사, 사옴·판촉물 발송, 법조치 업무, 법률자문, 녹취록 작성, 녹취서버 운영, 백업데이터 보관, 범죄행위의 고소·고발/관계 법령에 의한 요청기관(수사기관 및 기타요청기관), 금융사고방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료
- ③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 필수적 수집, 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위탁계약 종료 시 또는 위탁업무 완료 시 (단, 관련 법령의 별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따름)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20 년 월 일

신청인(본인)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신청인(본인) 생년월일	성명	(서명/인)
---	--------------	----	--------

※상기 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안내해드리며, 본 동의서는 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상기 동의사항은 상거래관계의 설정, 유지에 필수적이거나, 상거래관계에 따라 귀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거래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신용)정보 선택적 동의서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선택적인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의제공(사은품, 할인쿠폰 등), 신상품(서비스) 소개, 사은행사(할인,포인트 적립 등)안내, 판촉행사(특판금리 등)안내, 보험상품 안내 등 이용목적에 따른 혜택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 밖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은 없습니다.

1.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카드·금융상품 안내 및 이용권유를 위한 수집, 이용

- 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귀사 및 제휴사 상품·서비스 안내 및 이용권유 시장조사 및 상품·서비스 연구개발
- ②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필수적 수집,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 ③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계약 종료시까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카드·금융상품 이외의 부수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수집, 이용

- ①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여행, 통신판매 등 신용카드회사의 부수업무와 관련한 마케팅활동
 - 귀사가 보험 대리점 자격으로 행하는 위탁 보험상품 소개, 판매, 보험서비스 제공에 활용하거나 보험개발원 전산망의 보험 정보 조회 등의 목적으로 활용
- ②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필수적 수집, 이용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 ③ 개인(신용)정보의 보유, 이용기간:계약 종료시까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고객님께서 동의하시면 당사가 제공하는 유익한 서비스나 제휴혜택, 마케팅 행사 등을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면, 이메일 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용권유방법: 전화 문자메시지 서면 이메일 전부동의 동의하지 않음

※카드·금융상품 안내에 동의하셨더라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용권유 목적의 연락에 대한 중단을 언제라도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표전화: 1800-1111/ 홈페이지:www.hanacard.co.kr)

※상기 이용권유 동의는 하나멤버스 신규가입에 한하여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표전화:1800-0000 / 홈페이지:www.hanamembership.com)

※ 갱신 및 상품서비스 변경 안내 등 필수 고지사항은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생년월일

신청인(본인) (서명/인)

2.개인(신용)정보 선택적 제공에 관한 사항

하나금융그룹 내 자회사에 제공

- 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하나은행,하나캐피탈,하나생명보험 등 하나금융그룹내 자회사
- ② 개인(신용)정보 이용목적:하나금융그룹 자회사의 상품권유 및 판매 등의 마케팅활동
- ③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필수적 수집,이용 동의서에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 ④ 제공받는 자의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계약 종료시까지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귀사가 상기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생년월일

신청인(본인) (서명/인)

추가약정서

(고액 신용대출의 사후 용도관리 강화 관련 추가약정용)

하나카드 주식회사 앞

20 년 월 일

채 무 자 : (서명/인)

주 소 :

채무자는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하나카드”라 합니다.)와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신용대출 약정서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 1조 (목적) 이 약정서는 신규로 1억원을 초과하여 신용대출을 받거나,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아 신용대출 잔액^{주)}(소금융기관 합계)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 대해 대출거래를 하기 위한 약정입니다.

주) 한도대출의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기관과 약정 당시 설정한 한도금액을 대출총액으로 간주

제 2조 (주택 추가 구입 금지의무) 채무자는 본 대출 실행일부터 1년 또는 대출 전액 상환시기 중 빠른 일자까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구입^{주)}하지 않기로 합니다.

주) 매매, 증여, 상속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

제 3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제2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 8조 제 4항 제 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본 대출을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하나금융그룹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해 그룹사간에는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고객정보의 제공 및 관리)

①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과 절차(이하 "고객정보제공절차"라 한다)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2. 고객정보의 암호화 등 처리방법
3. 고객정보의 분리 보관
4. 고객정보의 이용기간 및 이용목적
5. 이용기간 경과 시 고객정보의 삭제
6. 그 밖에 고객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해당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증권을 매매하거나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증권총액정보등"이라 한다)를 고객정보제공절차에 따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 등에게 신용위험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예탁한 금전의 총액
2. 예탁한 증권의 총액
3.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이에 따라 하나금융그룹은 하나금융지주를 중심으로 고객정보를 그룹사간에 제공 및 이용하기 위하여 「고객정보 취급방침」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고객 여러분의 금융거래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더욱 더 만족스러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며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공되는 정보의 종류 및 제공처를 한정하고, 정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I. 제공되는 고객정보의 종류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하고자 하는 위탁자가 예탁한 금전 또는 증권에 관한 정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 가. 예탁한 금전의 총액
 - 나. 예탁한 증권의 총액
 - 다. 예탁한 증권의 종류별 총액
 - 라. 채무증권의 종류별 총액
 - 마. 수익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총액
 - 바. 예탁한 증권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 위탁자의 평균 증권보유기간 및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거래회수

II. 고객정보의 제공처

하나금융그룹 중 금융지주회사법령에 의한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한 회사는 하나금융지주(금융지주회사), 하나은행(은행업), 하나금융투자(금융투자업), 하나카드(신용카드업), 하나캐피탈(할부금융 및 시설대여업), 하나생명보험(생명보험업), 하나손해보험(손해보험업), 하나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업), 하나자산신탁(신탁업), 하나에프앤아이(NPL 투자관리업), 하나금융티아이(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핀크(그 외 기타금융지원서비스업)입니다.

III. 고객정보의 보호에 관한 내부방침

하나금융그룹에서는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를 최대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그룹사간 정보 제공 및 이용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절차와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①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 ② 그룹사의 임원 1인 이상을 고객정보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 ③ 그룹사별로 소관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 ④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시 서면 또는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금융지회사법령에 따라 고객정보관리인등의 결재를 받은 후 요청 및 제공하도록 하는 등 업무 프로세스의 정형화를 통해 엄격한 관리 및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⑤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요청 및 제공, 이용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하여 금융지회사 고객정보관리인에게 총괄관리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고객정보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 ⑥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 관련 취급방침의 제·개정시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고, 각 영업점(본점 해당부서 포함), 그리고 각 그룹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고객공지 의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⑦ 그룹사간 고객정보 제공 내역을 각 그룹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이용에 대한 고객의 조치가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 ⑧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고객 분을 위해 적절한 보상 및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민원사항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처리, 그리고 결과 및 통지 등 민원처리 관련 일체의 업무를수행할 소관부서를 그룹사마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 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를 통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⑨ 고객정보 제공 및 관리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자만 고객정보에 접근하고, 고객정보의 송·수신,보관 등에 있어 암호화하여 관리하며, 천재지변 및 외부로부터의 공격·침입 등 불가항력에 대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고객정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실시하는 등 철저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은 그룹사간 고객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허용한 것이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조치임을 명심하고 고객정보의 교류를 토대로 고객 여러분들께 보다 편리하고 질 높은 선진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고객 여러분의 고객정보의 보호 및 엄격한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지주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은행	고객정보관리인
	·하나금융투자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카드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캐피탈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생명보험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손해보험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저축은행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자산신탁	고객정보관리인	·하나에프앤아이	고객정보관리인
	·하나금융티아이	고객정보관리인	·핀크	고객정보관리인

고객권리안내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해 보장된 고객님의 권리를 안내 드립니다.

●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여부 판단 목적 및 고객이 동의한 목적으로만 이용 됩니다.

고객은 금융회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이하 “본인정보”)를 제휴·부가서비스 등을 위해 제휴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 소개 및 구매권유(이하 “마케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융 거래를 체결하거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동의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제휴·부가서비스 및 신상품서비스 등을 제공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 신용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5 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본인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타금융회사 등 제 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한 본인 정보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신청방법 : ① 당사 영업점 ② 고객센터 : 1800-11111

● 금융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금융회사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연체정보 등에 근거하여 금융거래를 거절/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거절/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동 정보를 제공한 기관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정보의 제3자알 제공 및 마케팅 목적의 전화 등의 중단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7 조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를 한 경우에도 본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는 것 및 당해 금융회사가 마케팅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전체 또는 사안별로 중단 시킬 수 있다. 다만,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신청방법 : ① 당사 영업점 ② 고객센터 : 1800-1111

제한: 중단 신청시에는 카드업무 등 관련 금융상품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고객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8 조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조회회사,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에 대해 열람 청구가 가능하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의 정정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 : ① 당사 영업점 ② 고객센터 : 1800-1111

● **본인 정보의 무료 열람 요구**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39 조에 본인 정보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신용조회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708-1000 (www.allcredit.co.kr)/NICE 평가정보(주) 1588-2486/ (www.credit.co.kr),
SCI 평가정보(주) 1577-1006 (www.siren24.com)

● **개인정보 유출피해 보상요구권**

하나카드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카드 : 1800-1111 (서울 중구 을지로 66)

여신금융협회 : 02-2011-0700 (서울 중구 다동길 43 한외빌딩 13 층)

금융감독원 : 133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하나카드주식회사(이하 “카드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카드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 ① 이 약관은 카드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할부금융이용자·차주·할인 신청인·지급보증신청인 등 카드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카드사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이 약관은 카드사의 본·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카드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 ① 리스료·할부금·이자·할인료·보증료·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계산방법·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카드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카드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카드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카드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카드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카드사의 인상·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⑤ 채무자가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카드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 ⑥ 카드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카드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 ⑧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카드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⑨ 제5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

제4조 (비용의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 조사·추심·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카드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카드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범위(現 연6푼)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 ③ 카드사는 여신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시설대여의 경우 리스료를 말함),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4조의2 (대출계약 철회)

- ① 채무자(개인에 한함)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시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4.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통화 대상 대출 등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 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카드사로부터 받은 재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카드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카드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카드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4.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카드사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채무자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 ④ 카드사는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 ⑤ 카드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⑥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카드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⑦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에 대해 채무자에게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카드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카드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카드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7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카드사는 담보목적물로서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카드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5. 채무자에게 제6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당해 카드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50조의11을 준수하였고 채무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제2항제5호에 따라 담보 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실은 카드사가 부담한다)

③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카드사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카드사 또는 카드사·카드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시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카드사가 채무자의 요청 등만으로 담보목적물을 즉시 처분한 경우 카드사가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5. 카드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의 정보

④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카드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⑤ 채무자(기업에 한함)가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카드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카드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① 카드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인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2.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경우 2인이상 가능하다. 가. 최대주주

나.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다. 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인 주주

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단, 고용임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3.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여신(리스, 할부, 오토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

나.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차량구입

4. 기타 여신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자 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

나.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해지)

다.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 대출시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라.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여신취급시 그 구성원(조합원)

5.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④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카드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채무자가 카드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⑥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카드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등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남아 있는 동안에는 카드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카드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카드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⑦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카드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⑧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만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 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등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카드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 제1호의 카드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 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카드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된 때
7.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8.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의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할부거래에 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 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카드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카드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 정보·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카드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카드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카드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카드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 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완공된 기계·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카드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 ①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카드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카드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카드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 ①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 ② 카드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보증계약을 갱신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 ③ 카드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카드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세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카드사가 알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보증계약 체결 후 카드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카드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의2 (할부거래법상 철회·항변권 안내)

카드사는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련 서류(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철회·항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 11 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카드사로부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카드사는 그 이행일부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카드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카드사는 그 이행일부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카드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카드사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카드사에 대한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카드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카드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카드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카드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카드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카드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카드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카드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카드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카드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카드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교부)

-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카드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카드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 ② 카드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 1. 카드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 2. 카드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 ③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카드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④ 카드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카드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카드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는 지체없이 이익을 표시하고, 카드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카드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 ①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카드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카드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면책조항)

-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카드사에 제출한 제 중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도중의 사고 등 카드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카드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카드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카드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할 후 갚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손상·멸실의 경우에 카드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중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중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중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④ 카드사가 어음이나 제 중서 등의 인영·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중서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중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 등과 인감·서명을 카드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인감·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카드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카드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① 카드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락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카드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부채현황·경영·업황 또는 용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카드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카드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공장·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영업·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카드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카드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카드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3조의2 (금리인하요구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카드사는 채무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안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채무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폰 문자메세지, 전자우편, 팩스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④ 채무자는 카드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카드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제24조 (이행장소·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카드사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① 카드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서,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서, 이를 알려야 합니다.

② 카드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채무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카드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카드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 칙

제1조(대출계약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제7항은 2021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하나카드 신용대출 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하나카드 주식회사(이하 “하나카드” 라 합니다)와 신용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하나카드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3조 (대출의 실행)

-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하나카드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 ② 하나카드는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 등)을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카드는 대출금액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 ①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하나카드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 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 ②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제 2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대출금리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며, 연체 발생시점에 대출금리가 없는 상품은 다음 각 목 중 높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 1.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 이율
 - 2.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 ④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⑤ 하나카드는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시(대환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5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카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하나카드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 ③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7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 ①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카드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 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 ③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6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하나카드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8조 (결제방법)

- ① 하나카드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 ③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하나카드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 ① 채무자는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카드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하나카드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채권양도)

하나카드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하나카드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13조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하나카드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동이체 약관

제1조(청구금액의 출금)

신청인 및 예금주(이하 “회원”이라 합니다)는 하나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가 지정하는 계좌이체일(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회사가 청구하는 금액을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한 은행 및 잔고보유 금융기관(이하“금융기관”이라 합니다)계좌(이하“지정계좌”라 합니다)에서 출금하여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2조(자동이체 처리절차)

자동납부를 위하여 지정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자동계좌이체 처리 절차에 의하여 출금 (지정계좌가 대출 가능한 계좌인 경우 그 약정한도 내에서)처리되며, 금융기관의 출금마감시간 내에 입금된 금액(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다.

제3조(지정계좌의 잔액부족시 출금방법)

카드사는 이용대금 결제일 현재 지정계좌의 잔액(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 부족으로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제일 이후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출금일에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2조의 방법에 따라 출금하여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4조(출금우선순위)

이체 일에 동일한 수종의 자동계좌이체 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순위는 자동이체신청의 지정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이미 약관에 의해 고객과 약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5조(이의제기)

자동이체 납부의 신규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회사의 청구대로 출금하되 청구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원과 회사가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합니다.

제6조(기타)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약관의 해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상관례, 표준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및 신용카드 개인회원 약관에 따릅니다.